

연평도 포격전 전승식 열렸지만... 전사자 정보관리는 '뒷전'

전사자 2명 군번 등 오류 '방치'
전쟁기념관·서울현충원 기록 달라
육·해·공·해병대 연계 조사 목소리

23일 대전현충원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거행됐다.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호국영령들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제각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서정우 하사 기록 각각 달라

23일 <메트로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은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추서)의 군번을 생전 군번과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국립대전현충원(국가보훈처 산하) 홈페이지의 '안장자 검색'을 통해 확인된 서 하사의 군번은 10-520668이지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의 '전사자 정보검색'에는 09-72002089로 기록하고 있는 것.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군번 표기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전사자 정보 검색(위)과 대전국립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아래)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문형철 기자

대한민국의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한 사건으로, 정전 협정 이래 최초로 북한이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사건이다.

때문에 후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따른다. 해병대와 유족은 2012년과 2015년 각각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공식 명칭의 변경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하다가 지난 3월 31일에서야 변경했다. 게다가 전사

자의 기본정보조차 바로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호국영령을 진심으로 기리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전현충원의 안장자 검색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검색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대전현충원의 자료와 해병대 측에서 보내온 병적기록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일치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과 서울현충원 누가 맞나?

전쟁기념관은 이름과 달리 국내 최대 전쟁박물관임을 자처하는 전시기관이지만, 전시 유물의 관리부실이다. 역사와 다른 고증 오류로 전문성을 의심받아 왔다. 서 하사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산하 서울현충원 기록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기록이 각기 다른 사례를 더 찾을 수 있었다. 1949년 5월 4일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 인근의 북한군 토치카(진지)에 육탄공격을 감행한 '육탄10용사'의 기록이 대표적이다.

당시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소속으로 육탄10용사 중 최선임이었던 서부덕 이등상사(현재 중사에 해당)는 사후 소위로 추서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수 언론들이 소위로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검색에는 계급은 중위, 군번은 15107로 기록돼 있다. 국방부가 관할하는 서울현충원에는 서부덕이라는 이름의 전사자가 3명이 안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검색에 따르면 육군 소위 서부덕은 육군 1사단 11연대 소속으로 군번기록이 없다. 그는 개성 송악산에서 전사해 1971년 8월 30일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6-1-

2305다. 육군 중위 서부덕은 소속부대는 표기되지 않았고 군번은 전쟁기념관의 기록과 동일했다. 사망일자는 소위 서부덕과 동일했지만, 사망장소는 표기되지 않았다. 중위 서부덕은 서울 위패로 모셔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47-3-091이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자가 1주일 늦은 육군 중사 서부덕이 있다. 9연대 소속으로 기록된 중사 서부덕의 군번은 5300845으로 서울 위패로 모셔진 그의 묘역/묘판/묘비 번호는 34-4-066이다.

종합해 볼 때 국방부가 관할하는 전쟁기념관과 서울현충원의 전사자 기록이 부정확한 사례가 더 나타날 수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민간의 개별적 지적에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바로잡기보다, 인사명령 등 세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육·해·공·해병대와 연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해병대 관계자는 "(서 하사의)군번 표기를 통일하는 방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영세 건설·제조업 안전조치 여전히 '미흡'

고용부, 10달간 8차례 현장점검
64% '추락·끼임' 등 수칙 위반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8회에 걸쳐 전국 2만487곳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만3202곳(64.4%)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과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에서 추락 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등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은 건설업이 68.1%로 제조업(55.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

설치(6.1%) 순이었다.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검증사 미설시(14.1%) 등이 주로 적발됐다.

규모별로는 건설·제조업 모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 조치 위반이 많았다.

7~8월 대비 9~10월 현장의 위반율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3억 미만은 6.0%포인트, 3억~10억원 미만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모두 2.6%포인트씩 증가했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지역별 건설·제조업과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 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내 일자리는 어디에'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구로구 채용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계시판을 보고 있다. /뉴스1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과징금 7800만원 부과
5년간 간 병·의원에 리베이트

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엠지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가 약 5년4개월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엠지는 2018년 말 기준 매출액 약

203억원 규모 회사로, 이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과 대표자가 구속되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영양수액제 제조 부문만 남기고 판매는 유한양행으로 이전됐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포도당 등 영양소 보급을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영양수액제 시장규모는 2017년 1133억원에서 2018년 1210억원, 2019년 13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지는 2012년9월~2017년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

는 3종의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를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회식비 등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엠지는 특히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숨기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과외 못한다

적발시 1년 이하 징역형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에 진입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000만원을 감수해야 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취업시킨 학원도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

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 사교육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에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포함시켰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감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 1년 이내 교습금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세종=한용수 기자